

광주광역시서구육교홍보물설치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사회발전과 더불어 주민들의 광고 욕구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99. 8. 30) 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홍보물 설치할 수 있는 육교 사용 수량 제한 규정 삭제(제8조)
- 홍보물 설치할 수 있는 육교 사용 기간 15일로 연장(제9조)
- 미사용 육교 사용료를 “90%”에서 “전액” 반환으로 개정(제10조)

3.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은 제2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99. 8. 30) 결과 완화 또는 폐지되어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 제8조 삭제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8조에서는 동일한 행사를 위하여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의 수를 행사의 규모, 성격 등을 판단하여 허가부서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육교 사용수량을 민원인과 허가부서 합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8조를 삭제하자는 안입니다.

홍보물을 설치할 수 있는 육교의 수를 허가부서의 재량에 따라 조정토록 하는 현행 조례는 행정편의적 사고방식에 따른 것이고,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하여 개정안처럼 당해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일한 육교에 대하여 사용허가신청서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으나, 허가신청자와 합의에 의하여 원만히 해결할 수도 있고,

현행 조례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할 육교 및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 조례 제8조의 삭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9조 제1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현행 조례 제9조 제1항에서는 홍보물 설치를 위한 육교사용기간을 7일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사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행사기간 동안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들의 광고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광고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안처럼 개정하여 15일 이내에서 사용기간을 결정토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15일 이상 장기간의 설치가 필요한 홍보물에 대하여는 현행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교사용을 허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안 제10조 제2항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10조 제2항에서는 육교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의 전액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육교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육교사용 개시일 전까지 육교사용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에만 징수한 사용료의 90%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징수한 사용료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원인에게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안 별표1 제11호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별표1 제11호에서는 육교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이를 전부 삭제하자는 것으로써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현행 조례 별표1 제11호가 이번 개정안의 논의대상이 되는 것은 징수된 사용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안 제10조 제2항 단서의 개정). 따라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육교사용료의 납부시기에 관한 사항까지 삭제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며,

현행 조례 별표1 제11호를 전부 삭제할 것이 아니라 육교사용료 납부 시기를 둘러싼 해석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육교사용료는 육교사용 허가 시 납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별표2는 앞서 언급한 개정 내용(안 제9조 제1항)을 반영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번 개정안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 조례 제4조 제4항 중 “제9조”를 “제10조”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 제9조가 아니라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